

공 고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공고 제 685호**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감사담당관-14929(2023.7.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예고문안 : 불임 입법예고문
 -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 다. 공고일자 : 2023. 7. 20.
 - 라.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10. (20일간)

공
고

공
고

불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공 고

민원순찰팀장 **김종찬** 감사담당관 **전결 07/18**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이동현** 의회법제팀장 **임경희**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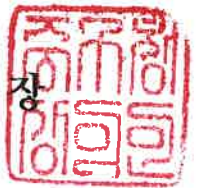
시행 감사담당관-14951 (2023. 7. 18.) 접수 ()
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4층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8022 /전송 3396-9017 / kjc74@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에 의거 직무 수행 관련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안 제1조~제3조)
- 기능, 구성(안 제4조~제5조)
- 위원장,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안 제6조~제8조)
- 위원겸직금지,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 의결 및 회의, 운영지원, 사무기구 등(안 제11조~제14조)
- 전문가 자문, 비밀누설 금지, 운영규칙 등(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8022, 팩스 : 02-3396-9017~8, email : kjc7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구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

직한다.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

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초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